

평창올림픽·SOC사업·주택경기 활성화 잇단 호재

도내 건설업계 시공 실적 쑥쑥

요진건설 2배 넘게 늘어 눈길

지난해 각종 대형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기성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와 대한전문건설 협회 도회는 28일 '2015년 실적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협회 도회 회원사의 전체 기성액은 총 2조7,813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5억2,600만원(16.9%)이 증가했다. 지난해 계약액도 전년 대비 7,013억9,500만원(31.8%) 증가한 2조9,079억400만원으로 향후 건설수주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기성실적이 늘어난 것은 지난

순위	◇2015년 도내 건설사 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명	기성실적	업체명	기성실적
1	요진건설산업(주)	480,576	(주)대련건설	48,955
2	현대아산(주)	109,548	대상이엔씨(주)	19,907
3	동일건설(주)	90,898	평창건설(주)	19,286
4	대림종합건설(주)	80,342	(주)삼우아이엠씨	18,436
5.	에스지건설(주)	66,153	(유)동원토건	16,932
6	신화건설(주)	52,806	(주)강산	16,729
7	(주)효성	44,507	윤도건설(주)	13,325
8	정상종합건설(주)	41,497	(주)한성토건	12,187
9	(주)흥원건설	40,156	(주)삼원이엔씨	11,910
10	(주)대건	40,149	선종건설(주)	11,845

〈자료 : 대한건설협회 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해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및 SOC사업 등 대형공사가 잇따라 발주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적

으로 주택경기 활성화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기성액 증기에 영향을 미

쳤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기성실적 전체 1위는 원주의 요진건설산업(주)(4,805억 7,600만원)이 차지했다. 요진건설산업의 지난해 기성액은 전년 2,270억2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성 현대아산(주)(1,095억4,800만원), 원주 동일건설(주)(908억9,800만원)의 순이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2015년 기성액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조1,675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회천 (주)대련건설이 489억5,500만원으로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액이 가장 많았으며 원주 대상이엔씨(주)(199억700만원), 원주 평창건설(주)(192억8,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위윤기자

삼척~태백 국도 공사 연내준공 차질 우려

〈38호선〉

【삼척~태백 간 국도 38호선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시공사와 모 사찰 간의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정상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07년 2월 공사에 착수한 국도 38호선은 삼척시 미로면~태백시 통동 간 25.4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나 미로면~신기면 3공구

신기면 구간 공사 마찰... 모 사찰 환경피해 주장 보상 요구
시공사 상환금 우려 공사 강행 - 사찰 측 "진입 막을 것"

와 신기면~도계읍 2공구의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기면 일원에 자리하고 있는 모 사찰이 사찰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주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공사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시공사들

이 사찰 진입로 입구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신도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2시간 동안 대치하는 과정에서 신도와 공사 관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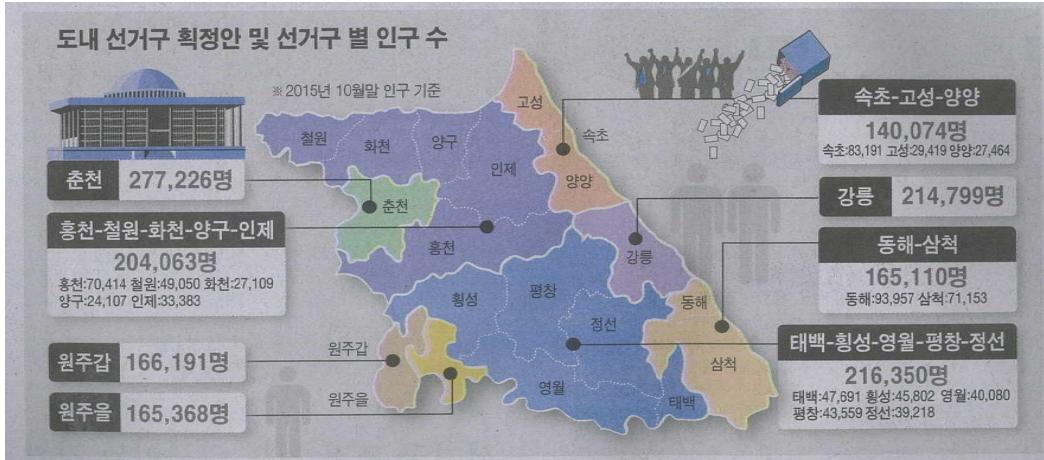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들은 당초 준공 예정인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하루 1억 6,000만~

1억 8,0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조만간 공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사찰 측 신도들은 발주처와 시공사들이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재개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경우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며 사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민진기자 hmj@knews.co.kr

도내 선거구 확정안 및 선거구 별 인구 수



건설경기 활성화 4대전략 추진

도내 업체 수주 경쟁력 강화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가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목표를 '건설산업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잡고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전략은 공정 시장 환경조성, 생신체계 혁신, 수요창출 및 신사업발굴,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충이다. 또 정상적인 기업경영 토대 구축, 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수요 창출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상생경영, 사회공헌 확대 및 건설기업 지위 향상 등 5개 핵심 분야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불합리한 중복 및 과잉 규제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성 실시공 기반 조성 △건설생산체계 글로벌화 △건설기업 육성 및 부실 기업剔除 △국민 안전 및 복지확충을 위한 건설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및 남북경협 활성화 △회원사 고충처리 및 경영애로 해소 등 20개 중점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도내에서는 60개 기관에서



3637개 사업에 3조 4143억 원이
발주된다.

분야별로는 건설공사가 2872건에 3조 2832억 원이며 설계용역이 765건에 1311억 원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와 시군이 51.5%인 2490건에 1조 7599억 원으로 발주액이 가장 많다.

또 원주국토관리청이 296건에 5193억 원, LH공사 강원본부가 15건 1735억 원, 도교육청 394건 1733억 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192건에 1581억 원 등이다. 도는 올 6월까지 연내 발주계획의 79.6%인 3434건 2조 7198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사업비만 보면 강원도 건설 경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아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주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도내 업체들이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건설 수주액 증가 경기부양 청신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부동산 활황으로 지난해 강원도내 건설사들의 기성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결과 613개 업체의 총 기성액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2조 7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성액이란 건설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축이 1조 541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목(1조 1069억 원), 조경(668억 원), 산업환경(6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종합건설 2조 7813억 원 전년대비 16% 상승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 구축사업 활발

전년대비 2535억 원 늘어난 4805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성 현대아산(1095억 4800만 원), 원주 등일건설(908억 9800만 원), 정선 대림종합건설(803억 4200만 원), 원주 에스지건설(661억 53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기성실적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전문건설협회 도회는 총 1866개 업체의 실적신고 결과 총

기성액은 1조 1675억 2000만 원으로 전년(1조 1450억 7600만 원)보다 2.0%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화천 대련건설이 489억 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원주 대상이엔씨(199억 700만 원), 원주 평창건설(192억 8600만 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설비건설협회 도회 소속 230개 업체의 기성액 총액은 1500억 5600만 원으로

전년(1354억 6500만 원)에 비해 145억 9100만 원 증가했다.

춘천 신흥개발은 59억 5100만 원을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1위를 차지했던 강릉 화신기업은 지난해 50억 2500만 원으로 2위에 머물렀고 삼척 건영엔지니어링(47억 7100만 원), 원주 한국이엔씨(45억 2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원건설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모처럼 호황을 맞고 있다"며 "도내 건설업계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건설업 유보금 실태’ 다음달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해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발주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점검한 결과, 100여개의 수급사업자들이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고 이 중 일부는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건설업종의 유보금 설정은 하도급 공사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유보금을 남기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법 위반 혐의 포착 관계기관과 종합대책 마련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구성도 추진

공정위는 유보금 설정을 경험한 수급사업자의 30% 가까이가 일방적인 유보금 설정 요구를 받았고 36% 정도는 설정방법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면서 다음달 중 유보금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 직권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발주기관이 공사 입찰을 실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를 명시하는 한편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발주기관과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건설업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감시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당초 계약된 하도급공사 외에 추가공사가 발생됐는데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 발생 시 원사업자 공사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 불가항력적이고 수급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등을 모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체찬 공정위원장은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 관행, 추가공사 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관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대금 직접지급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운용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장의 애로·견의사항을 파악해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이르면 2018년부터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처럼 공종별로 세분화해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자료는 몇 개 업종이 뭉뚱그려져 있어
발주자가 특정 공사를 맡길 적정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전문건설업 실적신고도 공종별로 세분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다음달 중 전문건설 공사 실적관리 세분화를 위한 정책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의 실적관리 방식을 업종별에서 업종 및 공종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문건설업은 실적신고를 할 때 일부 업종은 수개를 뛰어 하나의 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하나로 신고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실제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공종을 보면 25개 업종보다 적다.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지침에는 업종별 공종

국토부, 내달 정책용역 착수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

을 세 분류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내역서상 공종과 맞지 않거나 복잡해 정확하게 실적을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업종별 공사실정에 맞지 않는 분류코드로 인해 실제 공종별 실적관리에 한계가 있고, 종합건설업종과 실적관리의 연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5개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건설업의 실적신고 공종은 모두 33개다. 토목이 11개, 공종으로 가장 많고 건축 9개, 산업설비 10개, 조경 3개 등이다. 종합건설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

공능평가의 실적관리를 이처럼 세부 업종 및 공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실적관리 세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이르면 2018년 실적관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공사업의 실적관리를 세분화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법 시행 규칙 25조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관리를 단계적으로 공종별로 세분화해 중장기적으로 발주자가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줘서 건설 공사 실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 2016.02.29(월) 건설경제 】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하면 벌금 5000만원

건축분야 등 제재 내실화 방안 마련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국민안전처, 2017년부터 시행 예정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상향된다.

소방시설업 휴·폐업이나 재등록 시 신고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와 행정처분 승계 규정도 마련된다.

시행 시기는 2017년으로 예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는 지적을 받은 32개 안전수칙은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흡한 32건은 강화된다.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10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산업 분야는 총 9건의 규정이 신설·강화된다. 제재가 강화되는 과제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시공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기준뿐 아니라 △전기공사업자의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부정 등록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1000만원 이하 과태료→1500만원 이하 과태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신설 과제는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대리인 미지정(3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행정처분(지정 취소) △공사 중단 건축물 방치(벌칙 부과)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할 별도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공원 불법 산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소형선박 음주운전 벌금형 부과, 영화관의 재해대처계획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처벌 신설등도 추진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미 개정된 규정도 있지만, 앞으로 신설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확정된 74건의 제재 내실화 과제는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입법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용기자 je8day@

아하! 그렇구나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설계변경

Q

도로나 철도 등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A

도로나 철도 등의 장소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 등의 제약 사유로 인하여 주로 야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통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시 정해진 작업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증가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 측 사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당초 8시간으로 예정한 야간 공사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원·장비 등이 변경되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의 가 항이나 나 항에서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각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작업시간이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었는데, 공사시방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공사시간을 제한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기간 단축 변경을 지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공사비를 지금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임에도 발주처인 구청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작업시간 단축에 관한 공문을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정을 폭넓게 살펴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